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245
----------	------

제안년월일 : 2021년 2월 25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광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7호), 이영실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46호)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2021.2.26.)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이광호 의원 외 9명, 이영실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와 시장이 이륜자동

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낮은 가시광선 투과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련한 세부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인 바,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 나. 서울시장의 책무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제3항 신설)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차를 말한다.

10. “차량”이라 함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항가목의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실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차를 말한다.
	<u><신 설></u>	10. “차량”이라 함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항가목의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③·④ (생략)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② (생략)	안전운행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실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